

개정일 2012. 12. 26

정관

학교법인 경초학원

학교법인 경초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학교법인 경초(耕樵)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호남제일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53번지에 둔다.<개정 2011.12.30.>

제5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0><개정 2009.12.15>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 3. 10>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의 2 (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6.12.20>

성 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 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출연의사

②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10% 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다음과 같다.<신설2006.12.20>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경우 소재지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출연의사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08. 3. 10>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임여금의 처리) 본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임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 · 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예 · 결산서 공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단, 공시방법, 공시기간, 공시대상, 공시책임자 지정, 공시책임자의 직무, 책임 등을 포함한다. 삭제 후<신설2006.12.20>

제 3 절 예산 · 결산자문위원회<2008. 3. 10 삭제>

제13조(예산 · 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2008. 3. 10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①<2008. 3. 10 삭제>

②<2008. 3. 10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2008. 3. 10 삭제>

②<2008. 3. 10 삭제>

③<2008. 3. 10 삭제>

④<2008. 3. 10 삭제>

제16조(회의)<2008. 3. 10 삭제>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2008. 3. 10 삭제>

②<2008. 3. 10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및 개방이사 2인 포함)<개정 2008.3.10>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개정 2008.3.10>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 포함)<개정 2008.3.10>
2. 감사 3년(추천감사를 포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2.20><개정 2008.3.10>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20>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신설 2008. 3. 10>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개한 때

4. 본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 학생 • 학부모등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경초학원 건학이념에 찬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신설 2006. 12.20>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신설 2006. 12.20>

제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20><개정 2008. 3. 10>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6. 12.20>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학교 추천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2006. 12.20><신설 2008. 3. 10>

④ <삭제 2008. 3. 10>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호남제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10>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4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 12.20>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6. 12.20>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개정 2006. 12.20><개정 2008. 3. 10>

⑤ 제4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4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 12.20><개정 2008. 3. 1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 12.2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퀼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 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 12.20><개정 2008. 3. 10>

제 2 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 12.20>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 12.20>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 12.20>

제31조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 12.20><개정 2008. 3. 1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10>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본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한다. 다만,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까지는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명칭을 결정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입사업체의 사무(업)소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결정한다.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15>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12.15>

제38조(청산인) 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 하 되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15>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임면) ①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2.20>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임용 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20>

⑥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 2006. 12.20>

⑦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신설 2008. 3. 10>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40조(기간제교원) ① 교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7. 17>

1. 교원이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과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 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1조,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7>

제 2 관 신분 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8. 3. 10>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는 3년 이내로 한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불한다.

②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정년)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한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를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 12.20>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2.20>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2.20>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09. 7. 17>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7. 17>

제54조(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범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71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 법인과 본 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 승진 · 근속승진 · 승급 · 전직 · 전보 · 강임 · 휴직 · 복직 직위해제 · 면직 ·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3조(대우사무직원의 선발) 대우사무직원의 선발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75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임용령을 준용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정년) 본 법인에 소속한 학교의 사무직원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79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22>

제79조의1 (특별승진) ① 정관 제79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신설 2010. 2. 22>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 2. 22>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인

제80조(법인사무조직)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81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08. 3. 10>

제82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3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84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5조(위원정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86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차 연임 후 1기(1년)는 쉬어야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8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9조(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위원의 당연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회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회는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단, 학생졸업의 경우 3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제89조 제3항을 위반한 때

제91조(회의소집) ① 회의일수는 연간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회기개시 7일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92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3.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사항<신설 2008. 3. 10>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사항<신설 2008. 3. 10>

제93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92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운영 경비 등

제94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이사장의 감독 등) 이사장은 건학이념 및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관련 교직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직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3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학교교육분쟁위원회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5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7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10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도민일보에 공고한다.

제11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2(사학윤리강령의 준수 및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서 모든 교직원은 ‘사학윤리강령’과 ‘학교법인 경초학원 소속 교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개정 2012.12.26.>

제111조(설립당초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 재 호	20. 3. 8	승인 일부터-4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6-1 거성2차고속APT 1216호
이 사	김 택 수	49. 6.28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진북우성APT 106/1703호
이 사	이 용 현	34. 3. 1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51-9
이 사	김 인 수	49. 8. 7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284
이 사	김 덕 수	48. 5. 9	”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46
이 사	김 병 수	56. 3.13	승인 일부터-2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3-4
이 사	박 성 규	49. 8. 9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33 주공APT 123/505
이 사	김 용 칠	27. 8.14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04-2
이 사	조희정	36. 1.26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82-1 한신코아APT 1/1104
감 사	박 두 하	43. 9.19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202번지
감 사	이 직 현	57. 5.16	승인 일부터-1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4 신일APT 4/105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교법인 천만학원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일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은 본 법인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다만, 현 전일여자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9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 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2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06. 12.20>

3.(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신설 2006. 12.20>

4.제7조의 2는 정관인가일 이후 발생 재산출연 또는 기부 분부터 시행한다.<신설 2006. 12.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4 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7.1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법인 일반직 정원

◇ 총 계 6명

◇ 일반직 계 5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1명

9급(부서기) 1명

◇ 기능직 계 1명

9등급 1명

<별지 2>

학교 일반직 정원

◇ 총 계	7명
◇ 일반직 계	3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명
9급(부서기)	명
◇ 기능직 계	4명
6등급	명
7등급	명
8등급	명
9등급(사무보조원)	2명 <개정 2011.12.30.>
9등급(방호원)	2명 <개정 2011.12.30.>